

- 본 이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책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비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안천광역시 서구 당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성장관리권역이며 본 이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기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가 다음과 같이 적용됨

| 구 분 | 분양권 전매 제한 | 재당첨 제한 |
|-------------|------------------|-----------|
| 전용면적 85㎡ 초과 | 최초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1년 | 당첨일로부터 1년 |

- 단. 201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가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 제한 적용이 유예.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009, 4,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 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비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953호(2010,01,12)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토자구획정리시업자구 30블럭 1~5롯트
- 공급규모 및 내역: 아파트 지하2층, 지상 15층 10개동 총 55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중 아파트 일반공급 558세대(3자녀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17세대)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1.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m² / 세대)

| _ | ы | 아파트 코드 | 주택관리 번호 | 주택관리 번호 주택형 고그네이스 주택형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 | | | | 계약면적 | 세대별 | | | | |
|---|--------|----------|-----------------------|------------------------------------|------|----------|---------|----------|--------|--------|---------|---------|----------|---------|
| 7 | 분 | 아파트 코드 | (모델번호) (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 | 전용면적 | 주거공용 | 소계 | 관리・노인 | 전기・기계실 | 정치주네지 | 소계 | 게약단적 | 대지지분 | |
| | 민 | 22344-01 | 2010000038(01) | 107,4423 | 288 | 107.4423 | 24,6070 | 132,0493 | 2,6747 | 0,8021 | 53,8396 | 57,3164 | 189,3657 | 76,2143 |
| 2 | 명 주 | 22344-02 | 2010000038(02) | 115.7167 | 210 | 115.7167 | 26,3021 | 142,0188 | 2,8806 | 0.8639 | 57.9858 | 61,7303 | 203,7491 | 82,0839 |
| | 택 | 22344-03 | 2010000038(03) | 127,4136 | 90 | 127,4136 | 27,8206 | 155,2342 | 3,1721 | 0,9513 | 63,8473 | 67,9707 | 223,2049 | 90,3810 |

2.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m² /원 VAT 포함)

| | | | | | 분양가격 |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 | | 중도금 | | 잔금(30%) | | | |
|----------|------------------|--------------------------|-------------|-------------|-------------|------------------------|------------|------------|------------|------------|------------|-------------|-------------|-------------|
| 주택형(m²) | <i>층</i> 별 구분 | 동·호 | 공급세대 | ellelul | 기준비 | -11 | 310FL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이조되되어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계약시 | 2010.04.10 | 2010.08.10 | 2010.11.10 | 2011.03.10 | 2011.06.10 | 2011,10,10 | 입주지정일 |
| | 층 | 401E 400E | 9 | | 212,519,000 | 408,640,000 | 40,864,000 | 40,864,000 | 40,864,000 | 40,864,000 | 40,864,000 | 40,864,000 | 40,864,000 | 122,592,000 |
| | 2층 | 401동, 402동 403동, 404동 | 9 | | 214,779,000 | 410,900,000 | 41,090,000 | 41,090,000 | 41,090,000 | 41,090,000 | 41,090,000 | 41,090,000 | 41,090,000 | 123,270,000 |
| | 3~5층 | 405동, 406동 407동, 408동 | 30 | 196,121,000 | 221,039,000 | 417,160,000 | 41,716,000 | 41,716,000 | 41,716,000 | 41,716,000 | 41,716,000 | 41,716,000 | 41,716,000 | 125,148,000 |
| | 6~14층 | 409동, 410동 4호 | 90 | | 229,549,000 | 425,670,000 | 42,567,000 | 42,567,000 | 42,567,000 | 42,567,000 | 42,567,000 | 42,567,000 | 42,567,000 | 127,701,000 |
| 107.4423 | 15층 | 49 | 10 | | 240,069,000 | 436,190,000 | 43,619,000 | 43,619,000 | 43,619,000 | 43,619,000 | 43,619,000 | 43,619,000 | 43,619,000 | 130,857,000 |
| 107,4423 | 승 | 401E 400E | 5 | | 216,649,000 | 412,770,000 | 41,277,000 | 41,277,000 | 41,277,000 | 41,277,000 | 41,277,000 | 41,277,000 | 41,277,000 | 123,831,000 |
| | 2층 | 401동, 402동 403동, 404동 | 5 | | 219,059,000 | 415,180,000 | 41,518,000 | 41,518,000 | 41,518,000 | 41,518,000 | 41,518,000 | 41,518,000 | 41,518,000 | 124,554,000 |
| | 3~5층 | 405동, 406동 407동, 408동 | 30 | 196,121,000 | 225,359,000 | 421,480,000 | 42,148,000 | 42,148,000 | 42,148,000 | 42,148,000 | 42,148,000 | 42,148,000 | 42,148,000 | 126,444,000 |
| | 6~14층 | 409동, 410동 1호 10 | 233,969,000 | 430,090,000 | 43,009,000 | 43,009,000 | 43,009,000 | 43,009,000 | 43,009,000 | 43,009,000 | 43,009,000 | 129,027,000 | | |
| | 15층 | | 10 | | 244,569,000 | 440,690,000 | 44,069,000 | 44,069,000 | 44,069,000 | 44,069,000 | 44,069,000 | 44,069,000 | 44,069,000 | 132,207,000 |
| | 층 | | 14 | | 234,685,000 | 445,910,000 | 44,591,000 | 44,591,000 | 44,591,000 | 44,591,000 | 44,591,000 | 44,591,000 | 44,591,000 | 133,773,000 |
| | 2층 | 401동, 402동 403동, 404동 | 14 | | 237,175,000 | 448,400,000 | 44,840,000 | 44,840,000 | 44,840,000 | 44,840,000 | 44,840,000 | 44,840,000 | 44,840,000 | 134,520,000 |
| 115,7167 | 3~5층 | 405동, 406동 | 42 | 211,255,000 | 244,085,000 | 455,310,000 | 45,531,000 | 45,531,000 | 45,531,000 | 45,531,000 | 45,531,000 | 45,531,000 | 45,531,000 | 136,593,000 |
| | 6~14층 | 407동 2호, 3호 | 126 | | 253,275,000 | 464,500,000 | 46,450,000 | 46,450,000 | 46,450,000 | 46,450,000 | 46,450,000 | 46,450,000 | 46,450,000 | 139,350,000 |
| | 15층 | | 14 | | 264,715,000 | 475,940,000 | 47,594,000 | 47,594,000 | 47,594,000 | 47,594,000 | 47,594,000 | 47,594,000 | 47,594,000 | 142,782,000 |
| | 층 | | 6 | | 256,424,000 | 489,000,000 | 48,900,000 | 48,900,000 | 48,900,000 | 48,900,000 | 48,900,000 | 48,900,000 | 48,900,000 | 146,700,000 |
| | 2층 | 6 408동, 409동 | | 259,164,000 | 491,740,000 | 49,174,000 | 49,174,000 | 49,174,000 | 49,174,000 | 49,174,000 | 49,174,000 | 49,174,000 | 147,522,000 | |
| 127,4136 | 3~5층 | 410동 | 18 | 232,576,000 | 266,614,000 | 499,190,000 | 49,919,000 | 49,919,000 | 49,919,000 | 49,919,000 | 49,919,000 | 49,919,000 | 49,919,000 | 149,757,000 |
| | 6~14층 | 2호, 3호 | 54 | | 276,804,000 | 509,380,000 | 50,938,000 | 50,938,000 | 50,938,000 | 50,938,000 | 50,938,000 | 50,938,000 | 50,938,000 | 152,814,000 |
| | 15층 | | 6 | | 289,344,000 | 521,920,000 | 52,192,000 | 52,192,000 | 52,192,000 | 52,192,000 | 52,192,000 | 52,192,000 | 52,192,000 | 156,576,000 |





3. 일반분양 및 특별분양 공통시항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 층별 · 향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본 주택은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주택법시행령 제95조 제4항에 따른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이나 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에 의거 채권매입성한액을 산정한 결과 상한액은 '0'원임
- 2009. 4.1 ~ 2011. 3. 31까지 한시적으로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함
- •본 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되며 2010년 2월 11일 까지 계약분은 5년간 양도세 전액감면 혜택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3 의게)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가격이며 세대별 분양가격은 충별 · 향별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하오니 견본주택에서 확인 또는 배포된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비람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가격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기계실, 전기실 등 그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치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무상 발코니확장 공사비(일부, 107㎡ 침실2・3, 식당 / 115㎡ 침실2・3, 거살1 / 127㎡ 침실2・3, 거살1)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외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계약자 별도 계약 품목임]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받으며
-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2주택 이상을 소유한[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사실 포함)] 분은 1순위 청약이 제한 (2순위로 청약 가능)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특별공급 공통사항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호 제6항에 해당하는 3자녀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3%), 범위 내에서 공급되며 당사 견본주택에서 직접 접수와 추첨을 통해 분양대상자를 선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3자녀 특별공급) : 2010, 01, 18 (10:00 ~ 14:00) / 당사 견본주택
- 동 · 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10, 01, 18 (15:00) / 당사 견본주택
- 계약체결일 : 정당 당첨자 계약 체결일 내
- 특별공급 유의사항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mark>으며 배</mark>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가 없음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일반공급 : 특별공급을 제외한 순위내 가입자에게 공급하는 물량)
- 3자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 당첨자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됨
- 특별공급 당첨지중 괴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시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 주택의 당첨이 취소됨
- 특별공급당첨자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장소에는 당첨자 본인(또는 대리인) 및 동반인 1명까지 참석할 수 있으며 추첨은 참석한 본인(또는 대리인)이 직접 추첨함(단, 당첨자 본인(또는 대리인) 모두 불참 시 사업주체가 임의로 추첨 대리인을 선정하여 추첨함

▷ 특별공급 일정

| 면적구분(전 주택형) | 신청자격 | 거주구분 | 접수일자 | 추첨및당첨지발표 |
|-------------|---------------------------|---------------------|-----------------------------|-------------------------------|
| 전주택형 | 3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비자 |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2010. 01. 18(10:00 ~ 14:00) | 2010. 01. 18(15:00) / 당사 견본주택 |

▷특별공급세대수

(단위: m² / 세대)

| 구분 | 거주지별 | 107.4423 | 115.7167 | 127,4136 | 계 | | |
|---|-----------------|----------|----------|----------|----|--|--|
| 3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 인천광역시 거주자 | 5 | 3 | 1 | 9 | | |
| 에너 ㅜㅜ씩 세네ㅜ 득걸증ㅂ | 서울특별시 · 경기도 거주자 | 4 | 3 | 1 | 8 | | |
| | 합계 | 9 | 6 | 2 | 17 | | |
| ※ 주택형별 3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며 나머지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함 | | | | | | | |

1. 3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신청자격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0, 01. 13)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 입주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특별공급 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공급세대 : 총 공급세대의 3% 범위 이내로 17세대
- 청약예금 가입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함(단, 3자녀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당첨자는 제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기능하며 2건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함

▷ 구비서류

| 구 분 | 구비사항 |
|--------------------|---|
|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기준표(점수장소에 비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초본 1통(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자속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기능한 자(미혼·이혼·사별·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도정(본인 확인 후 서명) |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재직계 존ㆍ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 공급신청 위임용 기재)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임을 입증할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함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시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2005, 7,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ㆍ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요한 경우 반드시
-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3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신청시 배점표에 지필 작성 및 점수기재)

| 평점 | <u> </u> | 총배점 | 배점기준 | | - Ш 고 | | | | |
|--------------------|--|------------|-------------------------------|----------|--|--|--------------------------------|----|---|
| 7 | 계 | 100 | 기준 | 점수 | uj ± | | | | |
| | 미성년자녀 | 40 | 4자녀 이상 | 40 |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 | | |
| 자녀수 (1) | 195714 | 40 | 3자녀 | 35 | * 사네(BGM) 포함(C BT/시포BO프로 전세 전전세 비전한 경구한 포함 | | | | |
| 시네구(I) | GOVI | 10 | 2명이상 | 10 | 어머니 이저 마지고 그이 살린 마시네 마마시 그녀 | | | | |
| | 영유아 | 10 | 1명 | 5 | • 영유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인 자녀 | | | | |
| ullell | 구성(2) | 10 | 3세대이상 | |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 | | |
| 시나 | T84 | 10 | 2세대 | 5 | • 직 <mark>계존속은</mark>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 · 비속으로 구성 | | | | |
| | | | | | | |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 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이상 | 2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 · 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
| 무주택 | 기간 (3) | 20 |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 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이상 | 15 |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 | | | |
| | |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 | | | |
| | | | 10년0)상 | 20 | | | | | |
| 당해 시 · 도 거주 기간 (4) | | 5년이상~10년미만 | | 15 |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 | | |
| | | 20 | 1년이상~5년미만 | 10 | • 시는 특별시,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 도로 본다 | | | | |
| | | | 1년미만 | | | | | | |
| (1), (2): |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 | | (4) : 주민 | 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 | | |

(1), (2) : 주민등녹등본이나 가옥판계등명서로 확인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잔산감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녹등본이나 주민등녹소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 (단, 임신중에 있는 태이는 제외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주 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한다
-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한다
- ① 세대주가 시망한 경우 ②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2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0, 01, 13)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이상인 재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기능함 (단, 서울특별시 · 경기도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없이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거주지역 해당 청약 예치금액으로 청약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주택형(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당첨자 또는 기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청약 가능했다. 2011. 3, 3까지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기간에 상관없이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기능하며 1인 2건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동일순위 경쟁지중 경쟁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순위 | 면적구분(전용면적) | 신 청 자 격 | 거주구분 | 접수일자 | 청약접수 장소 및 시간 | 당첨지발표 |
|------|------------|---|-----------------------------------|------------------------------|---|--|
| | 가점제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청약자 본인 배우재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사실 포함] | | | | |
| 1순위 | 추첨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배우재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세대원 중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사실 포함)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은 감점 대상임 | | 2010, 01, 19(s̄) | | •일시 : 2010, 01, 27(수) |
| 1211 |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기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청약부금에 기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 이상이 경과된 1순위자로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순위 청약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1순위 청약제한 대상:청약예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인천광역 <i>시/</i> 서울 특별시 및 경기도 | 200, 01, 10(14) | • 인터넷청약: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zr.com)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cu.com) • 접수시간: 인터넷청약 0800 ~ 1730 | 장소:당사 견본주택 및 힐스테이트 홈페이지 한국경제신문 게재 ※ 당청자 명단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
| | 가점제 | • 2순위 청약자 전원 | | | |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
| 2순위 | 추점제 | • 가정제 낙청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별도 추첨제 신청자격 없음) | | 2010, 01, 20(-) | |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2ETI |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 기능한 청약예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적립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1순위자 중 1순위 청약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분 | | ZVIV, VI, ZV(T) | | |
| 3순위 | 전주택형 | • 상기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 | 2010. 01. 21(목) | • 접수장소 : 신한은행 본 · 지점 • 접수시간 : 0900 ∼ 1600 | |

-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기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시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 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 하시기 바람
- 1 · 2순위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 장애우 등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에서 청약가능함(창구 접수시간 09:00 ~ 16:00)
- 3순위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며 신한은행 본·지점에서 청약기능함(창구 접수시간 09:00 ~ 16:00)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및 '주택소유 관련 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시실 및 주택소유시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관련 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집
- 1) 청약혜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혜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혜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 부터 2년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혜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2) '94. 8, 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 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신청기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1)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2)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괴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3)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청약통장 예치금액

| 구 분(전용면적) |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인천 광역시(기타 광역시)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지역 |
|-----------------|---------------|----------------|-------------------------|
| 102㎡ 초과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청약가점제 및 주택소유 관련 유의사항

• 2007. 9.1 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지를 선정함

| 구 분 | 가점제 | 추첨제 |
|-------------|-----|-----|
| 전용면적 85㎡ 초과 | 50% | 50% |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 / 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지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기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치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1.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기점항목 | 기점 | 기점구분 | 점수 | 기점구분 | 점수 | 확인할서류등 |
|----------------------|----|------------------|----|-----------------|-------|--|
| | |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주민등록등본 |
| ① 무주 택 기간 | 32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꾸민등록등본 기족관계증명서 추가 |
| V774712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7 全との たっと、 ひちをむしいはるところ・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 | | 0명 (가입자 본인) | 5 | 4명 | 25 | |
| | 35 | 18 | 10 | 5명 | 30 | • 주민등록등· 초본 |
| ② 부양 가족수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3명 | 20 | - | - | |
| |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 |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0.017-1-1- | 17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③ 입주자 저축 기입기간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청약통쟁(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 |
| 716712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_ | |

2.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 ①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 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그리고 입주자저축 기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소형ㆍ저가주택"이라 한다)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ㆍ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재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소형·저기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단, 2007, 8, 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 일자가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재[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 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함

3.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 적용 기준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고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익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소유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4.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재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관리대장: 처리일
-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검사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② 85m² 이하의 단독주택
-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시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7)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소형·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호 가목 2)

- 전용면적 60㎡ 이하 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장기 보유 특례)
- ① (현재 :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ightarrow 현재 소형 · 저기주택을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 (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② (현재 :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ightarrow 해당 소형 \cdot 저기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 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 8, 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청약신청 접수방법

- 특별공급: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 일반공급
- 공통 : 충별, 동별, 항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 · 경기도지역 거주지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 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치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1.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

| 구분 |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 | | | |
|------------|---|----------------------------|--|--|--|--|
| 이용대상 | •1·2순위: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3순위: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며 창구 청약만 가능함(청약신청장소:신한은행 본·지점) | | | | | |
| VI04I0 |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 | | | | |
| 이용방법 및 절차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청약 | | | | | |
| NOOH X EVI | • 3순위청약 : 인터넷청약이 불가하며 창구 청약만 가능함 (청약신청장소 : 신한은행 본 · 지점) | | | | | |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2.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당 아파트는 2007, 9, 1 이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됨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없이 인터넷(창구 청약자 :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입력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 그러므로 청악자는 본인의 청악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주택소유여부,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등)을 신청 전에 정확히 파악하시고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가점항목: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참조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노약자 · 장애우 등 창구 청약시 구비서류

| 구분 | 구 비 사 항 | | |
|------|------------------|--|--|
| |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 • 주택공급신청세1 · 2순위: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비치 / 3순위: 신한은행에 비치 •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1 · 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제1 · 2순위에 한함)또는 서명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등) • 주민등록등본 1통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 작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 일반공급 |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재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쟁(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4. 3순위 청약신청금

| 장소 | 청약신청금 | 신청금 납부 방법 |
|-----------|-------|--|
| 신한은행 본·지점 | 200만원 | 창구 청약시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5.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환불장소 | 구비서류 |
|-----------------------------|-----------------------|---|
| 당첨자발표 2010, 01, 27(수) | 구IO+ TA A 주I | • 주택공급신청 접섞(영수)증 [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증 • 신청시 사용인감 또는 본인ㆍ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에 한함) |
| 익영업일 이후 (평일 0900 ~ 1600) | 청약 접수한 신한은행 본 · 지점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외에 추가 구비사항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생략) - 제3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제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신한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신청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단, 지정계좌(청약자 본인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 신청하신분은 당첨지발표 익영업일에 자동이체 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 구분 | 선정 방법 |
|------|---|
|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자의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동·호수를 결정함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과거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
| 공 통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기업은행 구분 없이 1・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ㆍ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가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행단, 1순위자 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공급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자역 거주 신청자가 서울특별시ㆍ경기도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신하며 서울특별시ㆍ경기도 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당첨자중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제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ㆍ호수를 배정함(동ㆍ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예비당첨자 명단, 순번은 당첨자 발표시 당사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정당 당첨자 계약중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자격 제한없이 임의 분양함 |

▶ 인터넷 · ARS 당첨자 발표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하신 분)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접수하신 분) | |
|----------|----------------------------|--|--|--|
| 인터넷 |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i2you.com)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
| [[| 0용기간 | 2010. 01. 27 ~ 02. 05 | 2010. 01, 27 ~ 02, 05 | |
| 전화(ARS) | 이용방법 | 먼저 이용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 | 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연속하여 누르세요 | |
| (한외(ARO) | 전화번호 |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 → 1 → 3) | 전화 1389(서비스코드 5#) | |
| | 이용기간 2010. 01. 27 ~ 02. 05 | | 2010. 01. 27 ~ 02. 05 | |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1 계약기간 및 장소

- ▷ 2010. 02. 01(월) ~ 02. 03(수) [3일간 / 시간 : 09:30 ~ 17:00]
- ▷ 계약장소 : 당사 견본주택(약도 및 전화번호 참조)

2. 분양대금 납부계좌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신한은행 | 140 - 008 - 716936 | (쥐다올신탁 |

3. 계약시 구비시항

| 구 분 | 구 비 사 항 |
|-----------------|---|
| | • 계약금(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 | •도쟁본인 확인 후 서명)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 고 통 | * 본건 확건 및 전경시적 확인시류가는지획, 기업명확할 합확의중 확인시표 경기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하증 - 주민등록등본 1통, 초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 |
| 0 0 | - 구단중복중 모든 문건인이당 - 구단중복중은 18, 요은 18 - 기록관계당장시 18배구시 문학세대에 한참 - 배구시의 구단중복중은 18(배구시 문학세대에 한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중 사본 1뷔또는 국내거소시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중 사본 1뷔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 | ※ 2005, 7,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란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
| |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기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 - 소형· 저기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ㆍ 비속 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세용도 : 이파트계약 위임용//통 |
| 시아시 네니 계급시 구기시랑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 |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①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②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 ③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시실이 있는경우
- ④ 기타 청약자격에 미달한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배우재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음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기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이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7조"에 준함

▶ 입주 예정자에 대한 안내

1, 입주예정일 및 사전점검 안내

- 입주예정월 : 2012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사전점검 안내 : 국토해양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 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사전점검 진행절차 : ①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 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전 보수완료 =〉 ⑦ 보수완료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배공사, 도장공사, 가구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기타 잡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등

2. 입주예정자에 대한 융자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당첨된 주택의 공급금액, 개인의 신용상태 및 소득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람 (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한도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별도)

| 구 분 | 건축·토목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
|------|-----------------|-------------|-----------|------------|
| 회사명 | ㈜하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주)신화ENF | ㈜지티엘이엔지 | ㈜지티엘이엔지 |
| 감리금액 | 1,579,432,501 | 310,108,228 | 9,000,000 | 80,000,000 |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38조 제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미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미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
|------|--|----------------------------------|
| 문 | 목재문(문짝, 문틀, 상부덧판, 문선), 창호철물일체(도어록,경첩 등), 디지털도어록 | 발코니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
| 바닥 | 온돌마루, 타일,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현관디딤판, 발코니 바닥타일(시멘트몰탈 포함) | 바닥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 벽 | 벽지(초배지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기변형벽체 | 석고보드마감, 단열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발코니벽도장 |
| 천장 | 천정지(초배지포함), 등박스(우물천정 포함), 반지돌림(몰딩 포함) | 천정틀 위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
|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등), 수전류, 액세시리, 천정째(천정틀 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욕실휀, 욕실바닥 및 벽타일 | 조적, 방수, 미장, 전기 설비 배관/배선 |
| 주방7구 |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수전류(수전 페달밸브 포함) 주방가전 일체 (가스쿡탑, 전기오븐, 음식물탈수기, 렌지후드, 식기건건조기, 에너지 속도계) | 소방검사 관련 후드 및 주방배기덕트 |
| 일반기구 | 신발장, 드레스룸장, 파우더장, 반침장, 수납선반, 발코니 하부장, 세탁망장 | |
| 조명기구 | 부착, 거치형 조명등 기구(매입등기구 제외) |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매입등기구 |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m²/원/VAT포함)

| 구 분 | 107.4423 | 115.7167 | 127.4136 |
|------------------|------------|------------|------------|
| 기본선택(마이너스 옵션 금액) | 23,928,000 | 25,734,000 | 27,640,000 |



■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1)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2) 분양 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3)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 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4)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5)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임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6)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 건축공사업자 또는 사업주체가 시공하여야 함

(※ 견본주택 내 분양시무실에 인천광역시 등록 실내건축공사업자 현황을 게시할 예정임)

7)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8)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9) 발코니확장(마감재 제외)과 가변식의 칸막이 제거(변경)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함

10)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지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 / 원 / VAT 포함)

| 구 분 | 107.4423 m² | 115.7167 m² | 127,4136 m² | |
|--------|-------------------|-------------|-------------|--|
| T & | 거실 + 주방 + 욕실/드레스룸 | 거실 + 주방 | 거실 + 주방 | |
| 확장 공사비 | 14,477,000 | 7,865,000 | 8,931,000 |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제46호 제4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2005년 12 2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증가비용이 <mark>정산된 금액임</mark>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비확장부위 발코니창호 및 대피공간의 외부창호는 미포함 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과 기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본 건물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 2008-14호)에 의해 예비인증 3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예비인증합니다

■ 택지비 감정평가 금액 및 기관 (단위 : 원)

| 구분 | 면적 (m²) | 감정기관 | 감정금액 |
|-------------------|-------------|---------------|-----------------|
| 75 TC1//01715/HT1 | 47.004.0004 |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주) | 134,866,640,940 |
| 공동주택(아파트)부지 | 47,321.6284 | (주)삼창감정평기법인 | 132,500,559,520 |

■ 연대보증인 : 대한주택보증(주) (단위 : 원)

| 보증기간 | 보증금 액 | 보증서 번호 |
|----------------------------------|------------------|----------------------|
| 입주지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시용검사 포함까지 | 185,362,401,000 | 01282010-101-0000300 |

■ 본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의 범위 :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기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및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 계약을 이행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번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5) 보증회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기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고하여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 12) 주채무자가 입주지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보상금
-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미감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 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체입주금의 90%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유에/한

- 1) 청약 시 신청한 내용과 민영주택공급 신청 접수(영수)증(청구청약자 : 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2) 청악저축에서 청악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지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기 바람
- 3) 선 순위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 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비람
- 4)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5) 본 주택의 당첨자(계약 미체결자 포함)는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6) 본 주택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기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전용면적 85㎡ 초과 1년)가 적용됨
- 기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 8)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음
- 9) 이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10)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기로 함(단,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함)
- 11)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12)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넒이표시 법정단위인 전용면적 [제곱미터(㎡)]으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평형 환산방법 : 주택형별 면적(㎡) x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 x 3,3058]
- 13)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시공시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 품절, 품귀 등으로 시공 중 유사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14)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전에 견본주택 내부를 사진촬영하여 보관 할 예정임
- 15)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처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익를 제기할 수 없음
- 16)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
-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타, 어린이놀이터, D/A, TOP LICHT, 상기, 관리동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7)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18)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 시공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19)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 및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불빛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참해될 수 있음
- 20) 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각 단지별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됨
- 21)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2)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안내 등)에 사용된 컴퓨터그래픽 및 일러스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된 상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 23)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아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채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24)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25)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26)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27)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28)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20) 발코니 확장 세대일 경우 인접세대 또는 상·하부세대가 비 확장일 경우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다소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 30)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시양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3) 기본형세대(비확장형세대)로 선택시 조명가구 및 배선가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2)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33)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34) 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계약 전에 전시품목 및 견본주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35)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36)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계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7)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38) 본 단지 서측 8미터 도로와 단지내 부지와 3~4미터 가량 높이 차이가 있음
- 39) 계약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명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 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승인 또는 설계변경에 관한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함
- 40)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시항이 발생할 수 있음
- 4) 단지 서축 일부에 종묘가 존재하고 남측으로는 드림파크로(수도권 매립지 전용도로)가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시업지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42)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시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치 아니함
- 43)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건물외관 및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등은 해당 관청과 협의/지문) 과정에 따라 결정 또는 변경 될 수 있음(변경시에는 입주자 사전점검시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익를 제기할 수 없음)
- 44) 지구단위계획상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소유권은 입주민에게 있으며, 입주자는 제3자의 자유로운 통행 및 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45) 주변건물 및 단지 내 공통주택과 남측 방음벽에 의한 일조권 · 조망권 · 사생활권 등의 환경적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견본주택과 사업부지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46)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ㆍ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47)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의 당하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후 가능하며, 입주시까지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부분에 대하여 이익를 제기할 수 없음
- 48)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당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 49) 본 주택은 수도권정비계확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되며 2010년 2월 11일 까지 계약분은 5년간 양도세 전액감면 혜택이 있음
- 50) 당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초등학교부지는 폐지될 예정이며 인근 완정 및 백석초등학교로 취학할 예정임
- 51)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52)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유의사항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람
- 위탁사: 이토건설주식회사(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인천 주택 2000 0004) / 이토씨앤디주식회사(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인천 주택 2001 0043)
- 시행사: 주식회사다올신탁(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서울 주택 2002 0315)
- 시공사: 현대건설주식회사(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주택 2003 040)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6블럭 4,5롯트 / 분양안내: 1588 6544
-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괴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 바랍니다

